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146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2,442,691원 및 이에 대한 2017. 7. 7.부터 2024. 7. 9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17. 7. 6. 강원 평창군 C 토지를 물적담보로 D에게 2억 3,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달리 이를 배척할 반증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D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통하여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7,557,309원을 공제한 82,442,6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17. 7. 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4. 7. 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은 D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, D이 대여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주장은 차용증서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.

한편 위 차용증서의 대여금 2억 3,000만 원 아래에 “A: 일억 팔천만원, E 오천만원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위 대여금 전부가 아니라 그 중 1억 8,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으나,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잔액은 피고의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할 것이다.

2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정원석